

강원도교육청 2013년 ~ 2018년 9월까지 처분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하나돌셋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규칙에는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하나돌셋유치원에서는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유치원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인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유치원 규칙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태백	하나돌셋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하나돌셋유치원에서는 2012년도 신입원아부터는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을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입력·저장한 후 학년도 말에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컴퓨터 저장매체 입력·관리를 위한 지정된 별지 서식 제1호에 작성하지 않고, 전산자료 보관용이 아닌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용 보조기록부(구 서식)만을 사용하는 등 유치원생활기록부를 부적절하게 작성 및 관리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시정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하나돌셋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라야 함.</p> <p>하나돌셋유치원에서는 2013년도 유치원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학교운영비 과목의 예산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구입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유치원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년도 학교운영비(업무추진비) 과목에 6,000,000원(500,000원 × 12개월)의 예산을 편성한 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 5. 7. 원장 '000' 에게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500천원)	시정완료
사립	태백	대건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규칙에는 1.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학급편제 및 정원 3.교육내용 4.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설립 인가를 받고자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고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대건유치원에서는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부터 1996. 2. 5.자 유치원 학급 및 정원을 2학급 80명으로 인가받았으나, 인가 및 규칙개정 절차 없이 3학급 88명으로 임의 증설·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수업운영방법, 입학금’의 조항 내용 중에 개정사항이 있음에도 적기에 개정하지 않고 존치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태백	대건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 규칙에는 학급편제 및 정원과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과 경영자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인가, 각종회계의 예·결산 관리 등은 교육장에게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p> <p>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은 대건유치원의 관할청으로서 대건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유치원의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에서는 대건유치원을 1996. 2. 5.자에 2학급 80명으로 설립 인가하였으나, 대건유치원에서는 실제 3학급으로 임의 증설하여 운영해 왔으며, 관할청에서는 설립이후 부당하게 학급을 증설·운영해온 사실과 2013년도 정원이 88명으로 8명 초과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2005년도부터 감사일까지 관할청으로서 적절한 행정조치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기관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대건유치원	2013	<p>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한 「2013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원 처우개선비는 지역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으로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원장, 원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담임수당은 지역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편성학급의 담당 교원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원 금액(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1만원(2013년 지원기준))을 지급대상 교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음.</p> <p>대건유치원에서는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한 교사 4명의 처우개선비와 편성학급 담임교사 2명의 담임수당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교원 개인계좌로 정당지급을 받고 있으나, 교원 간 보수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년(만62세)을 초과하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원장 000(만67세)에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유치원 예산에서 2013년 3월~5월 기간 동안 처우개선비 40만원을 매월 지급(3개월 1,200,000원)하였고,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부터 2학급 인가를 받았음에도 3학급으로 임의 증설·운영하면서 인가 외 학급 담임교사는 담임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담임교사 000에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유치원 예산에서 2013년 3월~5월 기간 동안에 담임수당 월 11만원을 지급(3개월 330,000원)하는 등 총 1,530,000원의 교원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교사 000에게 지급된 3개월 담임수당 330,000원은 부당지급에 해당하나 실제 담임역할을 수행하였기에 회수에서 제외함.</p>	신문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200천원)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3	<p>「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에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같은 규정 부칙(제15483호, 1997. 9. 23.)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2항에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p> <p>그러나 리라유치원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동 규정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2002. 9. 22.까지)에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건물 2개동 중 1개동(강원도속초시 조양동 0000번지, 연면적 518.72㎡) 및 유치원 부지 2필지(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0000번지 215㎡, 0000번지 942㎡)의 소유주체가 000(설립자 000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설립자인 000 명의로 전환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규칙에는 1. 교육 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리라유치원에서는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칙에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인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수료’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 하였으며, 원칙 제18조(기타비용 징수)에서 인용한 ‘강원도 재우회계규칙’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우회계규칙’으로 정확한 자치법규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근거 없는 자치법규명을 기재하는 등 유치원 규칙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3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리라유치원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1-2012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2013회계연도 예산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보고 없이 관할청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에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7호에 학교에는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리라유치원에서는 2004. 3. 3.자 개설한 유치원회계 거래계좌, 2008. 3. 20.자 개설한 야간돌봄 관련 거래계좌, 2012. 3. 12.자 개설한 중식비 및 간식비 관련 거래계좌 명의를 감사일 현재까지 ‘리라유치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원장 000’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회계에서 각종 물품 구입 시 사용하는 체크카드 명의로도 ‘원장 000’ 개인 명의로 개설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부)에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에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에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8조(출결상황)에 출결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되 “교육일수” 란에는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입력, “출석일수” 란에는 출석한 일수 입력, “결석일수” 란에는 결석한 일수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 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에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 번호를, “수료대장번호” 란은 만3세아 및 만4세아가 수료할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수료년도 및 수료대장번호를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리라유치원에서는 생활기록부 작성 시 ‘졸업대장번호’ 란은 졸업년도 및 졸업대장 번호, ‘수료대장번호’ 란은 수료년도 및 수료대장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가족상황’ 란은 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입력, ‘졸업 후의 상황’ 란은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출결상황’ 란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유아발달상황’ 란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되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하여야 함에도, 2013년 만 5세아 졸업생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졸업대장번호’ 란에 졸업년도 및 졸업대장번호 미입력, ‘수료대장번호’ 란에 수료년도 및 수료대장번호 미입력, ‘가족상황’ 란에 보호자의 출생년도 미입력 및 생년월일 일부 미입력, ‘졸업 후의 상황’ 란에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미입력, ‘출결상황’ 란에 일부 미입력, ‘유아발달상황’ 란에 교육 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입력하면서 문자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지 아니하고 ~하다, 합니다. 등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정선	반야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반야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2010~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산편성 한 사실이 있으며,</p> <p>-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2011.2월~2012.6월까지 유치원 운영비가 부족하여 2010~2012회계연도 기간에 8회에 걸쳐 총 40,000,000원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 중 23,0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상환하였으나, 2010~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과목(관)차입금(항)차입금(목)개인차입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차입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상환 시에는 세출예산 과목(관)상환·반환금(항)상환·반환금(목)상환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낙산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을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같은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에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낙산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2007. 12. 4.자 ‘유치원 시설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한 보장보험’ (보험기간 : 2007. 12. 4.~2010. 12. 4. 3년, 월보험료 : 1,000,000원, 가입처 : 00화재)을 000(낙산유치원 운영책임 원장) 명의로 가입하여 유치원회계에서 총 36,000,000원을 납입하였고, 2010. 12. 7.자 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 26,714,400원을 000 명의 계좌로 환급 받았으나, 이 중 16,500,000원만 2010회계연도 유치원회계로 세입조치 하고, 10,214,400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없이 낙산사 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0,214천원)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낙산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p> <p>또한, 같은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낙산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12회계연도에 수업료, 잡수입 등 세입금의 증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관)관리운영비에서 22,910,000원, 관)재산조성비에서 37,690,000원을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p> <p>- 유치원 운영비로 2011회계연도 133,000,000원, 2012회계연도 87,000,000원을 낙산사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연도에 상환하면서 세입예산 과목 관)차입금 항)차입금 목)개인차입금, 세출예산 과목 관)상환·반환금 항)상환·반환금 목)상환금으로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낙산유치원	2013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낙산유치원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0~2012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2013회계연도 예산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보고 없이 관할청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규칙에는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규칙에 기재사항인 재입학, 편입학, 전학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 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유치원생활기록부관리)에서 인용한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18호(2009. 6. 5.))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1013-7호, 2013. 1. 23.)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유치원규칙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3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유치원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예산 및 결산, 2013회계연도 예산을 관할청인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에 미 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의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2008회계연도부터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2008회계연도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 및 증빙서, 2011회계연도 및 2012회계연도 징수결의서와 수입일계표를 미 보존하였으며, 2013회계연도에는 유치원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인 징수결의서 및 수입일계표를 미 비치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에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 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7호에 학교에는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거래통장 명의를 2003. 5. 31.자 개설 시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푸른하늘유치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장 000’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2. 12. 4.자 개설한 유치원 차량교체비 적립금 통장 및 2013. 4. 25.자 개설한 퇴직적립금 통장 명의로도 ‘푸른하늘유치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장 000’ 개인 명의로 개설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유치원회계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할 신용카드를 ‘푸른하늘유치원’ 명의로 발급 받아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장 000 및 남편 000 개인카드로 결제 후 유치원회계에서 원장 000 및 남편 000의 개인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치원회계 거래계좌 명의 및 신용카드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3	<p>「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23. 제정) 제27조(사립 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에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같은 규정 부칙(제15483호, 1997.9.23.)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2항에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p> <p>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를 2002. 9. 22. 까지 설립자인 원장 000의 명의로 전환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000번지에 위치한 용촌1리 마을회관(대지 410㎡, 건물 연면적 178.48㎡)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3	<p>「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2항 및 제51조(준용규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로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23. 제정)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에 사립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함.</p> <p>대동유치원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전 설립자 00건설 대표이사 00이 현 설립자 00에게 2003.12.15.자로 동해시 동회동 000번지 대동유치원(대지지분 및 건축물 일체)를 400,000천원에 유치원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p> <p>- 또한 현 설립자는 대동건설이 부도로 인해 유치원의 대지와 건축물이 1998.6.3. 00은행에 근저당(채권 최고액 850,000천원) 설정되어 있고 00건설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의 현금출납부 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대동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08~2011회계연도까지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 2012회계연도 징수결의서와 수입일계표를 미보존하였으며, 2013회계연도에는 유치원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인 징수결의서 및 수입일계표를 미비치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3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제3항에 따르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함.</p> <p>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p> <p>대동유치원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2013회계연도에 급식 식재료비, 주유비 등의 물품구입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 외에 무통장입금표, 청구서, 거래내역서 등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26건, 5,885,6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유치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수익자부담경비로 징수한 영어교육교재비 및 2학기 재료비 11,760,000원이 유치원회계 개설(2013.04.30.) 이전에 사용했던 원장 000 개인통장(새마을금고 4232-000-000)으로 입금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13.11.06)까지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 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무지개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08-2011회계연도까지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미보존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무지개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2013년 만5세아 졸업생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졸업대장번호’ 란에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 미 입력, 성별 미 입력, ‘가족상황’ 란에 부모(보호자)의 생년월일 미 입력, ‘졸업후의 상황’ 란에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미 입력, ‘유아발달상황’ 란에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면서 문자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합니다. 등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으며,</p> <p>-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는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을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에서 규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등 유치원생활기록부를 부적절하게 작성 및 관리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3	<p>「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교지),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자의 소유이어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함.</p> <p>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함.</p> <p>무지개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함에도, 무지개유치원 옆에 소재한 '00000어학원' (원장 000) 소유의 체육장(동해시 천곡1길 0000번지)을 공동사용 한다는 이유로 체육장에 설치 공사중인 '테크공사' 계약금 5,000,000원을 2013.11.01. '전원주택 000' 에게 유치원회계에서 송금한 사실이 있음.</p> <p>- 또한, 2013년 유치원급식을 운영하면서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3년 3월~6월까지 조리원 000에게 1개월 단위로 총 4회 21,600,000원을 송금하여 급식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게 하였으며, 2013년 7월~10월까지 원장 000 개인통장에서 급식 식재료 및 소모품 대금을 먼저 집행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원장 000 개인통장으로 총 9회 27,145,95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5,000천원)	시정완료
사립	강릉	성원유치원	2013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성원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 작성 시 '졸업대장번호' 란은 졸업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유아발달상황' 란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되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하여야 함에도, 2012~2013년 졸업생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졸업대장번호' 란에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 미 입력, '유아발달상황' 란에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입력하면서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지 않고 ~입니다, ~합니다. 등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성원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학의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성원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2013회계연도 3월~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유치원 교육과 무관한 0000문화재단 이사장의 주유비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으로 총 71건 6,99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6,990천원)	시정완료
사립	삼척	노란유치원	2013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제3항에 따르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함.</p> <p>그러나 노란유치원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2013회계연도에 교사교육비(연수비), 급식재료비, 운동회준비금 등의 물품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 외에 무통장입금표, 청구서, 거래내역서 등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8건 3,331,4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노란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의하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등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유치원회계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의 사전 검토와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 없이, 노후시설 보수와 통원차량 구입을 이유로 2012~2013회계연도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에 적립금을 편성하고, 2012.1.31. 적립금 명목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으며,</p> <p>- 2012회계연도에 54,013,494원을 적립하고,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유치원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6,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에는 28,244,630원을 적립하고, 세입예산 편성 없이 통원차량 구입을 목적으로 20,000,000원을 집행하는 등 2012~2013회계연도에 총 82,258,124원을 적립하고, 26,0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노란유치원	2013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예산 총계주의원칙)에서는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p> <p>또한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에서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노란유치원에서는 동 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니고, 설립자 000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학교법인의 설립관계자가 아님. 또한 2012회계연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설립자생계비 또는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설립자가 퇴직(강원대학교 교수직)했다는 이유로, 2012.3월~2013.2월 기간 동안 설립자 000에게 '설립자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총 24,000,000원(매월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24,000천원)	시정완료
사립	삼척	중앙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규칙에는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중앙유치원에서는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지 않는 등 유치원규칙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중앙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중앙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에 운영위원을 구성하면서 설립자 및 지역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님에도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외에 지역위원 1명, 설립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유치원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한 번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성호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규칙에는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성호유치원에서는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칙에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인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 기재하는 등 유치원 규칙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성호유치원	2014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 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성호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09~2013회계연도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2009~2011회계연도 지출부,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청송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시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하고 유치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2013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교원이 아닌 행정직장을 교원위원으로 선출하였으며, 원장 000이 2013. 6. 30. 퇴직하고 현재 원장 000이 2013. 7. 1. 채용되었는데도 운영위원을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규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 등 유치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황지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황지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 작성 시 ‘졸업후의 상황’란은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하고, ‘유아발달상황’란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되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하며, ‘졸업대장번호’란은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사진’란에는 상반신 칼라 사진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2013년 만5세아 졸업생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졸업후의 상황’란에 진학 학교 등 유아 진로상황 미입력, ‘졸업대장번호’란에 졸업연도 미입력, ‘사진’란에 상반신 칼라 사진 미입력, 2011, 2012학년도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아발달상황’란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입력하면서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지 아니하고 ~입니다, ~합니다. 등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황지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황지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원이 20명 이상(72명)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며, 유아수 100명 미만(51명)으로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계획 및 절차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위원을 구성하면서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교원위원에 포함하여야 하나 원장을 제외한 총 3명으로 구성하여 위원 정수에 2-5명 부족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 구성비율도 학부모위원 3-5명, 교원위원 2-3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여 학부모위원 1-3명, 교원위원 2-3명이 구성비율 보다 부족하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태백	황지유치원	2014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황지유치원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미제출에 대한 사유 보고 없이, 예산은 2011회계연도 86일 경과한 2011. 5. 19. 보고, 2012회계연도 미보고, 2013회계연도 66일 경과한 2013. 4. 30. 보고하였으며, 결산은 2012회계연도 미보고, 2013회계연도 3일 경과한 2013. 6. 3.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바라밀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2014. 2. 28. 현재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유치원 주요사항에 대해 자문 없이 추진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4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또한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p> <p>바라밀유치원에서는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등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교실 증축을 이유로 유치원회계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의 사전 검토와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 없이 2012~2013회계연도에 예산 편성 후 총 20회 100,000,00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중앙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 사항)에 유치원규칙에는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그러나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중앙유치원에서는 중앙유치원 원칙에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인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등을 반영하지 않아 유치원규칙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중앙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중앙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생년월일’란에 일부 유아 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족상황’란에 부모 생년월일 미입력, ‘학적사항’란에 입학 전 경험, 어린이집 재재기간 미 입력 등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천사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천사유치원에서는 2009.09.23.자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제5조에 규정된 [별표] 서식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컴퓨터 저장매체에 기재하여 20년간 보관하고, 그 출력물은 유아가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에 입학 및 전입하여 2012학년도 졸업한 13명의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컴퓨터 저장매체에 기재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기재한 유치원생활기록부만 보관하고 있으며,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 시 “학적사항” 란 졸업연월일, 원명, 연령, “졸업후의 상황” 란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졸결상황” 란 2012학년도 교육일수, 결석일수 등을 미 기재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천사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천사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정원이 100명 미만(72명)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며, 유아수 100명 미만(45명)으로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2013.02.26.자로 위원 정수 6명(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하였으나, 부위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선출하여 2013학년도에 총 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4.03.01.부터 시행 예정인 「천사유치원 규칙」을 2013.11.01.자로 개정하면서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개정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태백	천사유치원	2014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에 학교의 지출명령 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천사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지출명령기관은 원장으로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시 원장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인을 행하여야 하나,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2014.02.25.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명령권자인 원장의 지출명령(지출원인행위 원장 결재)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좋은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좋은유치원에서는 2013. 3. 2. 학부모 O·T (Orientation) 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 4. 6.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개최하지 않았고 2013학년도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4. 2. 27.)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채 운영위원회를 개최(2013.11.14)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좋은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좋은유치원에서는 2013년 만5세아 졸업생 유치원생활기록부의 ‘가족상황’ 란 부모(보호자)의 생년월일 미 입력, ‘졸업 후의 상황’ 란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상당부분 미 입력, ‘유아발달상황’ 란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면서 문장의 끝맺음을 ‘~합니다.’, ‘~습니다.’ 등으로 일부 입력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좋은유치원	2014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좋은유치원에서는 2012회계연도 유치원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인 2012. 2.24.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인 2013. 5.31.까지 해당관할청인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기간 내 미 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2회계연도 예산서는 2012. 2.29. 제출로 보고기일 5일 지연, 2012회계연도 결산서는 2013. 7.22. 제출로 보고기일을 52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좋은유치원	2014	<p>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좋은유치원에서는 2013년 교직원 보수를 지급하면서 급여는 원천징수할 금액을 공제한 후 실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장 '000'의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6개월간)의 급여에서 업무상 착오로 원천징수할 공제금액인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월별 급여대장에 작성은 하였으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함하여 총 3,497,640원을 과다하게 지급을 하였고, 이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시 원장 '000'을 포함하여 전교직원 9명을 모두 유치원회계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 또한 행정실장 '000'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8개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전 급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총 823,7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4,321천원)	시정완료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4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다솔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함에도 설립자 '000'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통학차량 구입비를 적립한다는 명목으로 15개월 동안 급여로 총 49,800,000원을 前원장 '000'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후 배우자 '000'(당시 교사, 現원장직무대행)에게 지시하여 급여로 6,500,000원만을 '000'의 별도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 43,300,000원을 별도의 다솔유치원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43,300천원)	시정완료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8335(2014. 4. 3.) 및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14082(204. 6. 10.)호의 의거 다솔유치원 원장 해임에 따라 1차로 2014. 4. 30. 및 2차로 2014. 6. 30.까지 유사직 원장을 채용 후 임용보고 하도록 지시하였다.</p> <p>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다솔유치원에서는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서 前원장 '000' 해임에 따라 1차 2014. 4. 30. 및 2차 2014. 6. 30.까지 원장을 임용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다솔유치원 설립자 '000'은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을 임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4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다솔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3. 1. 개원 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예쁜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상번호’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상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상번호’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상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예쁜유치원에서는 2012학년도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2013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2015.04.10.)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중 ‘유아의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가족상황’란에 부모의 생년월일 미기재, 학적사항 중 ‘졸업 후의 상황’ 미기재, 졸업상황 중 ‘교육일수’, ‘출석일수’, ‘결석일수’, ‘특기사항’ 미기재, 신체발달상황 중 ‘검사일’ 미기재, 유아발달상황은 5개 영역에 대한 발달상황 및 종합평가 미기재, ‘수료·졸업대상번호’란을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2013.10.01.자 시행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개정된 유치원 생활기록부 양식을 사용하여 함에도, 2014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2015.04.10.)까지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는 등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예쁜유치원	2015	<p>「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고, 같은 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또한,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p> <p>예쁜유치원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쁜유치원 소속 000 외 14명의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퇴직 관련 서류,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리라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제14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르고,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리라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 확정 후 차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금 증가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2012~201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규칙에서 정한 예산과목을 따르지 않았고, 2012회계연도에는 13,619,705원(예산액 501,866,000원, 결산액 515,485,705원)을, 2013회계연도에는 96,372,735원(예산액 514,463,000원, 결산액 610,835,735원)을, 2014회계연도에는 62,827,355원(예산액 591,354,000원, 결산액 654,181,355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리라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리라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4회계연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유아학비(국고보조금) 350,450,000원 중 교육연구실 및 자연학습장 구입 및 관련 건 공사대금 등으로 150,03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입한 교육연구실 및 자연학습장은 주택 및 토지로써, 1층 중 증축된(구입전) 방 1칸은 유치원생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방, 화장실 등은 원장 시부모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구입 후 증축하여 증축부분은 원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기존부분(방2, 화장실)은 원장과 시설장(원장의 남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 직권 재심의 결과 통보 : 감사관-1353(2016.2.25.) 재정상 회수금액 변경 (142,710,000원 → 1,479,750원) * 당초 회수금액 150,034,000원을 재심의결정에서 142,710,000원으로 조정하여 회수 대상금액은 142,710,000원 이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480천원)	시정완료
사립	동해	리라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리라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201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장을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2013, 2015학년도 현재 교원이 아닌 시설장을 교원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12, 2013학년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부모위원이 아닌 시설장으로 구성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시정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리라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 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리라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작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학년도 유치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료대장번호, 졸업대장번호를 정정하면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하지 아니하고, 빨간색 볼펜으로 두 줄을 긋거나, 기록한 내용 위에 다시 기록하였으며, 201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면서 ‘가족상황 란’에 부모의 생년월일을 기록하지 않았고, 만5세 졸업생의 ‘졸업후의 상황란’에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동해남부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동해남부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5.4.3.)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유치원 규칙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유치원 주요사항에 대해 한 번도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동해남부유치원	2015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동해남부유치원에서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르고, 예산확정 후 전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금 증가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12~201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규칙에서 정한 예산과목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31,070,890원(예산액 323,631,000원, 결산액 354,701,890원), 2013회계연도 30,048,210원(예산액 347,917,000원, 결산액 377,965,21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2회계연도 20일, 2013회계연도 72일, 2014회계연도는 38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15.02.23.까지 보고하였어야 할 2015회계연도 예산은 감사일 현재(2015.04.03.)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동해남부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동해남부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10~2012 회계연도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유치원회계 서류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문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아이솔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아이솔유치원에서는 2014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유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전체 원아 105명(학기중 입.퇴소 원아 포함) 중 102명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모두를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 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신문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아이솔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아이솔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원이 20명 이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며, 유아수 100명 이상(114명)으로 위원 정수는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2015. 4. 1.자 제3기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총 6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 정수에 3~5명 부족하게 구성하였으며, 구성비율도 학부모위원 6~7명, 교원위원 3~4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학부모 위원 2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학부모위원 4~5명, 교원위원 1~2명이 구성비율 보다 부족하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나 교원위원인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며,</p> <p>또한, 2012학년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아이솔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아이솔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원장 000 및 개인 000, 000 등 3명으로부터 유치원운영비 부족 등의 사유로 2011회계연도 9회 68,000,000원, 2012회계연도 6회 59,000,000원, 2013회계연도 16건 150,023,133원, 2014회계연도 12건 73,500,000원 총 350,523,133원을 개인에게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2011회계연도 2회 20,000,000원, 2012회계연도 2회 20,000,000원, 2013회계연도 5회 87,523,133원, 2014회계연도 3건 21,500,000원 총 149,023,133원을 아이솔유치원 계좌(농협 000-0000-2039-03)에서 차입·상환한 사실이 있으며,</p> <p>2011~2014회계연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상환금을 운용하면서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관)차입금(항)차입금(목)개인차입금(으로, 세출예산 과목(관)상환·반환금(항)상환·반환금(목)상환금·이자상환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솔빛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장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솔빛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2015.3.18.)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유치원의 주요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미설치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솔빛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따르면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및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솔빛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따르면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2010회계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함에도, 2010~2012회계연도까지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증빙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등 증빙서류를 미보존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솔빛유치원	2015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솔빛유치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12회계연도 19,236천원 초과수입, 13,713천원 초과지출(기정예산액 484,500천원, 결산서상 세입액 503,736천원, 세출액 498,213천원)하였고,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예·결산 제출시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2회계연도 예산 19일, 2013회계연도 예산 71일, 2014회계연도 예산 36일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솔빛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솔빛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유치원 실·내외 시설보수를 위하여 2013.7.8. 30,000,000원을 유치원 원장 000 명의의 계좌(농협 000-5326-4093-53)에 적립하고 조립식 판넬 구조 변경을 위하여 2013.9.13. 30,000,000원을 유치원 원장 000 명의의 계좌(농협 000-5326-4093-13)에 적립하면서 보고하지 아니하고 적립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성혜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성혜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원이 100명 이상(136명)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며, 위원 정수는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7명 총 9명(임기 : 2014.1.1. ~ 2014.12.31.), 2015년도에는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3명 총 5명(임기 : 2015.1.1. ~ 2015.12.31.)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정수에 적합한 비율이 아니거나 부족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 2014년에 1회, 2015년 2회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유치원규칙의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의 유치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강릉	성혜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및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되,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성혜유치원에서는 예산확정 후 전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금 증가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12회계연도 41,415,896원(예산액 296,001,000원, 2013.03.04.자 기준 수납액 328,078,247원, 집행액 337,416,896원, 원장개인부담 9,338,649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정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새싹유치원	2015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새싹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예산은 28일에서 282일, 결산은 60일에서 425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강릉유치원	2015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강릉유치원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13,743,621원을 2015년 11월 11일 현재까지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p>	행정상처분-시정	시정완료
사립	강릉	강릉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강릉유치원에서는 2013년 제1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총 12회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4년 5월 유치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며, 2013년~2014년에는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2013년~2015년에는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강릉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강릉유치원에서는 2014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인 73명 중 민음반 8명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학부모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2013학년도 이전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모두 미보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소에 원아 건강검진 예정시기 및 과거 검진여부 조회도 실시하지 않는 등 원아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 보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금천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제4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토지, 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사립 유치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금천유치원에서는 2014. 3. 1.자 및 2015. 2. 1.자로 유치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규칙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개정하였으며, 교육장에게 인가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교육장에게 인가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인가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2015. 2. 1. 개정 「금천유치원 규칙」 제40조(규칙개정절차)에는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교직원회의를 거쳐 대표자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라고 하여 유치원규칙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는 등 유치원규칙 개정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금천유치원	2015	<p>금천유치원에서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르고, 예산확정 후 전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금 증가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12~201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규칙에서 정한 예산과목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97,176,014원(예산액 241,704,000원, 결산액 338,880,294원), 2013회계연도 63,335,692원(예산액 288,524,000원, 결산액 351,859,692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인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2회계연도 예산 185일, 결산 24일, 2013회계연도 예산 4일, 결산 11일, 2014회계연도는 예산 3일을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새롬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제4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토지, 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사립 유치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새롬유치원에서는 2014. 4. 17.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유치원규칙을 갖추어 교육장에게 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교육장에게 인가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인가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2014. 4. 17.자 개정 「새롬유치원 규칙」 제32조(위원의 선출)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33조(시행 세부사항)에 운영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2014~2015학년도에 학년도별 운영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장 1명만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로 제정하지 않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새롬유치원	2015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 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새롬유치원에서는 2012~2015학년도에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1호]서식과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였고, ‘가족상황’ 란에 부모(보호자)의 생년월일 일부 미 입력, ‘졸업후의 상황’ 란에 진학한 학교 일부 미 입력, ‘유아발달상황’ 란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면서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지 아니하고 ~한다, ~있다. 등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청담유치원	2016	<p>청담유치원 설립자 000은 2007.2.1.부터 2015.5.30.까지 원주 00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으로 원주시에 신고 되어 있고, 2015. 6. 30.부터 2015. 9. 15.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며 동시에 2015. 3. 1.부터 감사일인 2016. 1. 14.까지 청담유치원 설립자 겸 사무직원으로 강릉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재직함</p> <p>- 설립자 겸 사무직원 000은 00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5. 7월 3백만원, 8월 5백만원, 9월 3,729,680원 등 어린이집에서 총 11,729,680원을 수령하고, 청담유치원에서 사무직원 급여로 2015.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7백만원씩 총 49,000,000원을 수령하여 영유아교육법상 전임 및 겸직금지위위 위반과 유아교육법상 상근의무를 위반하여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몰라서 이중수령 하였음을 진술함</p> <p>설립자 겸 사무직원 000과 000은 2015. 3. 1. 청담유치원 개원시 원장으로 000을 보고하였으나 실제 원장역활은 000이 담당하여 원장 000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000은 방과후 교사로서 2015. 3월부터 12월까지 처우개선비로 10개월 4백만원, 담임수당으로 2015. 12월분 49,670원 등 총 4,049,67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4,049천원)	시정완료
사립	동해	상지유치원 (2016.11.22. 폐원)	2016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 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상지유치원에서 교사 000, 000은 2014학년도에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교사 000은 2013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유아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고, 그 외에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유아발달상황, 기타사항을 미기재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상지유치원 (2016.11.22. 폐원)	2016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상지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원아 14명의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성화유치원	2016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현금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및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성화유치원에서는 2012회계연도의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증빙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등 증빙서를 보존기간 만료 전에 파기하고 미 보존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가야유치원 (2018.3.7.폐원)	2016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상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상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상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상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관리하되, 전산자료는 30년간 보관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유아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 가야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 10명, 2014학년도 14명, 2015학년도 8명 총 32명의 유아에 대한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가야유치원 (2018.3.7.폐원)	2016	<p>「유아교육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정해진 시기에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나, 가야유치원에서는 2014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전체 원아 15명 중 만4세(캔디반) “ooo” 만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만3세(캔디반) “ooo” 외 2명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만3세(캔디반) “ooo” 외 10명은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이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가야유치원 (2018.3.7.폐원)	2016	<p>「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전에 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교육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시기가 2012. 1. 1. ~ 2013. 1. 28. 인 운영자는 안전교육 기간이 매 3년마다에서 매 2년마다로 단축되는 도로교통법이 2014. 12. 31. 개정되어 2015. 1. 28.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2015. 7. 28.까지 차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p> <p>가야유치원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現 그랜드스타렉스 15인승, 차량번호 78서 0000)를 운영하면서 운영자 정기 안전교육을 2012. 5. 3. 받은 후 감사일 현재(2016. 3. 2.)까지 정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가야유치원 (2018.3.7.폐원)	2016	<p>「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 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가야유치원에서는 교사 000과 2011.3.1.자로 채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감사일 현재(2016. 2. 3.)까지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꿈나라유치원	2016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꿈나라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중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입액에 큰 증감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2013~2014회계연도에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액에 큰 폭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예산 및 결산서를 기간 내 미 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3~2015년 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꿈나라유치원	2016	<p>「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고, 같은 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p> <p>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2,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꿈나라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유치원 교직원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고, 의무가입 사항인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꿈나라유치원	2016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꿈나라유치원에서는 2013. 1. 23.자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관리하되 전산자료는 30년간 보관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유아가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학년도 9명, 2013학년도 7명, 2014학년도 9명 총 25명의 유아에 대한 유치원생활기록부를 감사일 현재(2016. 2. 19.)까지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꿈나라유치원	2016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꿈나라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12~2013회계연도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유치원회계 서류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성원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 규칙에는 1.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에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성원유치원에서에서는 사립유치원 원비는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는 사립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성원유치원규칙(2016.3.1.개정) 제5장(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1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장(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제1항에는 운영위원회를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일반위원1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성원유치원운영위원회회칙에서는 구성인원을 10인으로 정하고 있어 규칙과 규정이 서로 상이하하며, 유치원규칙에 포함해야 할 기재사항 중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었음에도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성원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성원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고시 제2014-50호, 2014.9.29.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여 2015학년도 생활기록부에는 ○○○외 24명의 인적사항란에 ‘유아의 생년월일’ 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부모 가족상황란에는 ○○○외 1명의 부 생년월일을 미기재하였으며, 출결상황란에 수업일수, 출석일수, 결석일수, 특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반 원아 28명은 출석일수를 미기재하였고 △△반 원아 27명은 결석일수를 미기재하였으며, 2014학년도 생활기록부에는 ○○○외 3명의 인적사항란에 부모의 생년월일을 미기재하였고, 출결상황란에는 수업일수, 출석일수, 결석일수, 특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반 원아 29명과 △△반 원아 27명에 대하여 출석일수를 미기재 하는 등 생활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유치원생활기록부가 준영구 보관 하여야 할 중요문서이므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결재 절차를 거쳐 생산하여야 함에도 담임교사가 작성한 생활기록부를 결재절차 없이 그대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등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성원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6조(계약담당자),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학교회계에 부담되는 자금을 지출 시에는 관련 계약·지출서류 등의 증빙을 갖추어 정당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을 초과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15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p> <p>또한,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로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8조(납부)에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제4호에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p> <p>성원유치원에서는 2015. 7. 25.자 ‘본관건물 옥상 기와노후 교체공사’ (계약금액 52,000,000) 및 2016. 6. 20.자 ‘난방용 전기보일러 3대 교체작업공사’ (계약금액 28,05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계약보증서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지세액 만큼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상기 공사 계약에 대하여 각 70,000원 및 20,000원의 인지를 도급계약서에 붙여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계약금액 1천 5백만원 이상인 2015. 7. 25.자 ‘본관건물 옥상 기와노후 교체공사’ (계약금액 52,000,000) 및 2016. 6. 20.자 ‘난방용 전기보일러 3대 교체작업공사’ (계약금액 28,050,000원)에 대하여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성원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성원유치원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2016회계연도에 관할청에 사전보고 없이 차입금 제도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원조보조금,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세입금 및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출금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의 사용료 및 수수료 과목 15,500원 등 세입합계 28,109원, 세출결산액의 학교운영지원비 과목 1,383,530원,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의 사용료 및 수수료 과목 529,096원 등 세입합계 1,076,591원, 세출결산액의 상환반환금 650원, 학교운영지원비 9,431,000원,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의 원조보조금 740,800원 등 세입합계 680,327원, 세출예산액의 인건비 34,492원 등 세출합계 359,102원을 초과하여 수입 및 지출이 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초과 수입·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소화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유치원 규칙에는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에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그러나 소화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61호)」이 2015.2.24.자로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소화유치원규칙(2014.1.20.개정) 제11조(교육과정운영) 제2항에 “기본교육과정이라 함은 1일 3시간~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상이함에도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부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시정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소화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소화유치원에서는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만 5세 원아에 대하여 2014학년도에는 원아 55명 중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28명,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명만 보관하고 있고, 2015학년도에는 원아 55명 중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35명,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는 4명만 보관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에는 유아 56명 중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38명,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는 4명만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소화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또한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소화유치원에서는 2014.02.17. 55,000,000원을 통학버스 구입비 명목으로 적립하면서 세출예산과목을 적립금이 아닌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였으며, 통학버스 구입 적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유치원회계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관할청의 사전 검토와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보고 절차 없이 2014.02.17. 적립금 명목의 계좌를 개설(농협)하여 2015.05.28. 이자를 포함한 적립금 55,702,573원을 세입조치 후 2015.05.29. 48,000,000원 및 2015.05.30. 15,900,000원을 통학버스 구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소화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 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소화유치원에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2014회계연도 9건 655,000원, 2015회계연도 28건 2,714,450원, 2016회계연도 23건 1,829,075원, 총60건 5,198,525원을 급식비와 관계가 없는 교사회식비 및 교사 저녁식사 등 업무추진비성 간담회 식사 경비를 식품비 항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J반, K반, M반, S반 교사 ○○○, ○○○, ○○○, ○○○는 생활기록부를 2014.9.29.자 시행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2014년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중 ‘유아의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학적사항 중 ‘졸업 후의 상황’ 미기재, ‘수료·졸업대장번호’ 미기재, 인적사항 중 성별 오류, 수료대장 번호와 생활기록부 수료대장 번호 불일치, 유아발달상황란에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으로 통일하지 않고 ~입니다, ~합니다 등으로 입력, 2015년 교사 ○○○, ○○○, ○○○, ○○○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가족사항란에 부모의 생년월일을 일부 누락하였으며, 수료대장과 생활기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수료대장 생년월일 미기재, 유아발달상황란에 문장의 끝맺음을 ~함, ~임으로 통일하지 않고 ~입니다, ~합니다 등으로 입력하는 등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2014년도 ○○○ 외 28명, 2015년도 ○○○ 외 69명, 2016년 ○○○ 외 59명의 재학 중인 전체 원아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장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2017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2017.03.20.까지 관련 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2017.05.30.자로 선출 절차 없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당선자를 공고하였으며, 위원 수가 9명인 경우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학부모 60/100~70/100, 교원 30/100~40/100)하여야 함에도 학부모위원 5명, 교원 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학부모 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p>또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임에도 2015회계연도 1,499,500원(앨범비 1,349,500원, 체육복비 50,000원)과 2016회계연도 앨범비 2,160,000원을 운영위원회의 안건 반영과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수하여 집행하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 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원장 ○○○와 2014.02.01.자로 채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감사일 현재(2017.07.18.)까지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2017년 3월 1일자 학급보조교사 ○○○을 채용하면서 감사일 현재(2017.07.18.)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6조(계약담당자),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학교회계에 부담되는 자금을 지출 시에는 관련 계약·지출서류 등의 증빙을 갖추어 정당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을 초과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15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p> <p>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2016.03.04.자 '강당(체육관) 공사' (총 지급금액 46,800,000원) 및 2017.01.04.자 '체육관 바닥공사' (총 지급금액 20,90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등의 징구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계약금액 1천 5백만원 이상인 상기 2건의 공사에 대하여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같은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3(학교세입예산과목), 별표4(학교세출예산과목)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는 규정되어 있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2014년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치원교육과 무관한 강릉시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를 2014.10.29. 500,000원, 2015.10.05. 750,000원 총 2회에 걸쳐 1,25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250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원조보조금, 학교운영지원비등 세입금 및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출금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분은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의 원보조금 과목 10,956,000원 등 세입합계 22,326,359원, 세출결산액의 관리운영비 과목 13,421,280원 등 세출합계 21,405,510원,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의 사용료 및 수수료 과목 3,505,000원 등 세입합계 28,179,326원, 세출예산액의 관리운영비 58,132,587원 등 세출합계 15,418,869원,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의 학교운영지원비 과목 1,350,000원 등 초과된 과목별 세입합계 1,874,669원, 세출예산액의 관리운영비 과목 19,054,560원 등 초과된 과목별 세출합계 47,929,980원을 초과하여 수입 및 지출이 되었음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초과 수입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p> <p>또한, 제이엠유치원에서는 2017회계연도 교육비 3,937,455원을 2016회계연도에서 집행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잔액 -2,703,887원, 통장잔액 1,233,568원으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제이엠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에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고, 학교장의 장은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고, 수입원과 지출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8조(수입금 징수)에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하고, 제29조(수입금의 수납)에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4조(각종서식)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 서식까지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제이엠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4조에 따라 수입금 징수와 관련한 징수결의서, 수입금의 수납과 관련한 수입결의서 및 수입일계표, 지출과 관련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면서 유치원장은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로 유치원회계 수입금 징수 관련 징수결의서, 수입결의서, 수입일계표에 세입징수자인 원장 결재가 있어야 하고, 지출 시 지출명령자인 원장의 지출명령(지출원인행위 원장 결재)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함에도, 2017회계연도 3월부터 감사일(2017.07.19.) 현재까지 징수결의서, 수입결의서, 수입일계표에 세입징수자인 원장 결재 없이 수입금을 징수 및 수납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지출명령권자인 원장 지출명령(지출원인행위 원장 결재) 및 지출원의 결재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p> <p>또한,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중 201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감사일(2017.07.19.) 현재까지 재산대장과 도면, 세출내역부 미비치 하였으며, 유치원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감사일 1일전인 2017.07.17.에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료를 출력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등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리라유치원에서는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만5세 원아에 대하여 2015학년도에는 원아 41명 중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3명만 보관하고 있고, 2016학년도에는 원아 48명 중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9명만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p> <p>또한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p> <p>리라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중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입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2013~2016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액에 증감이 있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세출의 정의),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6조(계약담당자),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충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제53조의 2항 1호(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학교회계에 부담되는 자금을 지출 시에는 관련 계약? 지출서류 등의 증빙을 갖추어 정당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리라유치원에서는 2014. 1. 9.자 '식당 시설 보수' (계약금액 5,950,000원)외 견적서, 영수증, 계좌이체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리라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리라유치원에서는 2016년~2017년 유아수가 100명 이상으로 위원정수는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리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위원의 정수)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6~2017학년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정수에 부족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p> <p>또한, ‘유치원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낙산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p> <p>또한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p> <p>낙산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중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입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2013~2016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액에 증감이 있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6 회계연도 결산시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다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낙산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또한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낙산유치원에서는 2016. 2. 29. 32,000,000원을 시설개보수 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면서 시설개보수 적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유치원회계 적립금의 적립에 대한 관할청의 사전보고는 있으나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보고 절차 없이 2016. 2. 29. 적립금 명목의 계좌를 개설(신한)하여 적립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낙산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6조(계약담당자),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학교회계에 부담되는 자금을 지출 시에는 관련 계약·지출서류 등의 증빙을 갖추어 정당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기간(조경공사: 2년, 보증금율: 100분의 5)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게 되어 있다.</p> <p>또한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로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8조(납부)에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제4호에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규정되어 있다.</p> <p>낙산유치원에서는 2015. 5. 20.자 ‘조경공사’ (계약금액 14,997,000원) 및 2016. 7. 14.자 ‘조경공사’ (계약금액 12,230,000원)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지세액 만큼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상기 공사 계약에 대하여 각 2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조경공사는 공사계약금액에 관계없이 2년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는데도,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 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대동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생산·관리하지 않았으며, 또한 출력물로도 생산·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생활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대동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처리를 확인한 결과 2014년과 2015년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할 경우 보호자로부터 검진자료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6년도에는 전체 원아 103명 중 58명의 건강검진 자료가 누락되는 등 대동유치원은 건강검진 실시와 검진 결과물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대동유치원은 2015~2017년 현재까지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르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p> <p>대동유치원에서는 차입금도 수입에 해당되어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2015회계연도 6회 33,000,000원, 2016회계연도 1회 4,400,000원을 차입하면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제출 하여야 함에도, 기간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4~2017회계연도 본예산을 최단 31일, 최장 78일을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7	<p>「2016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계획(교육과-17701, 2016. 9. 21.)호」에 따르면 “유치원 정보공시 확대 실시에 따라 정보공시의 신뢰도?활동도 제고를 위해 정확한 정보공시 정보입력을 강조하여 왔으므로 정보공시 허위 입력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고(전액 환수조치), 또한 중도 폐원, 허위보고 적발 등 문제 발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라고 안내하였다.</p> <p>대동유치원 2016학년도 학급편성운영을 확인한 결과 출석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는 6학급으로 되어있으나, 등록원아와 출석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 2016학년도 상반기 교원 임용현황에 교사 5명으로 보고한 점, 생활기록부가 5학급[대동유-170502, (2017. 5. 2) 2016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전체) 작성결과 보고]으로 내부결재 처리된 점을 보아 실제로는 5학급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됨</p> <p>실제로 5학급(만3세 2반, 만4세 2반, 만5세 1반)을 운영하였음에도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 확정학급 편성현황 보고에 2016학년도 편성학급수를 6학급(만3세 2반, 만4세 2반, 만5세 2반)으로 보고·입력하여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 3,480,000원(년간 1학급 지원액)을 과다 교부 받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문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840천원)	시정완료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동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p> <p>대동유치원에서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5~2017회계연도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schoolbus.ssif.or.kr)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외에 목적외로 유치원 설립자 개인소유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1,434,990원[2015. 4. 15.(413,560원), 2016. 4. 14.(499,530원), 2017. 4. 14.(521,900원)]를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문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435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무지개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기록부 전체를 출력하여 보존은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활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생산·관리하지 않는 등 생활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무지개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처리를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 보호자로부터 검진자료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실시하지 않았고, 2016년도의 경우 전체원아 196명 중 33명 원아의 검진자료가 누락되는 등 건강검진 실시와 검진 결과를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10조(유치원규칙), 같은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유치원규칙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유치원 규칙은 학급편제 및 정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담임수당은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편성학급의 담당 교원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월 11만원(2015~2016년 지원기준)의 담임수당을 지급대상 교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다.</p> <p>무지개유치원 학급 인가현황을 보면,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으로부터 1992년 10월 10일 2학급으로 최초 인가 후 2012년 12월 24일 7학급으로, 2017년 2월 27일 8학급으로 증설인가를 받았음</p> <p>그러나 무지개유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학급증설 인가 없이 8학급으로 증설·운영하였으며, 또한 인가 외 학급 담임교사는 담임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증설한 1학급에 대하여 교사를 채용하여 학급 담임을 맡기면서 유치원 예산으로 2015년 3월~2017년 2월(24개월)까지 담임 수당을 월 11만원씩 총 2,64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동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p> <p>무지개유치원에서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4년~2017년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이 임대해 준 건물에 입주한 영어학원(스펀지)의 상하수도 요금 3,587,590원을 24회에 걸쳐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 또한, 동 기간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schoolbus.ssif.or.kr)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외에 목적외로 유치원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정비 등을 위하여 총21회 4,230,430원, 원장 소유차량의 자동차보험료 3,591,19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총 11,409,210원을 목적외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1,409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무지개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무지개유치원은 2015~2017년 현재까지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적절하게 처리하였고,</p> <p>또한 같은 기간동안 유아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1명 이하로 해야함에도 '15년~'16년 12명, '17년 8명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다르게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대건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대건유치원에서는 2016년 3월~2017년 2월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수료·졸업대장번호 작성시 연도와 숫자를 연결하는 ‘-’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고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점과 ‘일자’를 입력할 때 숫자만 공백을 두지 않고 두자리 숫자로 입력해야 하나,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가족사항’ 란에 부모의 성명 및 생년월일 일부 미입력, ‘졸업후의 상황란’에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일부 미 입력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및 기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태백	대건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대건유치원에서는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2016년 재원했던 원아 69명 중 영유아건강검진 46명 및 구강검진 68명의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여 유아 건강 검진 실시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대건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대건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원이 20명 이상(52명)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며 2015. 4. 1.자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을 구성하면서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교원위원에 포함하여야 하나 원장을 제외하고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태백	하나돌셋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 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하나돌셋유치원에서는 2015~2017년까지 변경된 양식에 의한 생활기록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졸업.대장 번호와 수료대장 번호의 미 입력, 장기결석의 경우 사유 미 입력, 학기별 1회의 신체발달상황 기록 미비, 졸업 후의 상황을 미 입력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및 기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하나돌셋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하나돌셋유치원에서는 2015. 3. 1.자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구성 비율 중 학교운영위원 구성 대상이 아닌 지역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여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구성비율 보다 부족하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유치원규칙 개정 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태백	하나돌셋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5(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 별표 6(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하나돌셋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원장으로부터 유치원운영비로 2013회계연도 9회 29,000,000원, 2014회계연도 6회 16,500,000원, 2015회계연도 6회 24,000,000원, 2016회계연도 1회 5,000,000원 총 74,500,000원을 일시차입하여 사용하고 2013회계연도 6회 39,002,000원, 2014회계연도 3회 11,587,860원, 2015회계연도 4회 16,291,260, 2016회계연도 4회 11,000,500원 총 77,881,620원을 상환하면서 차입금보다 3,381,620원을 과다 상환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 관)차입금 향)차입금 목)단기차입금으로, 세출예산 과목 관)상환금 향)상환금 목)단기차입상환금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여 유치원 운영비 일시 차입 및 상환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382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노란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노란유치원에서는 2017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전체 유아 중 영유아건강검진 87명, 영유아구강검진 4명의 결과통보서관 일부 보관하고 있어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표관리에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노란유치원	2017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노란유치원에서는 예산 및 결산서를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4~2017년 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노란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노란유치원에서는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 운영 및 원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2015~2017회계연도에 설립자에게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및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60,000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노란유치원	2017	<p>「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고, 같은 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또한,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p> <p>노란유치원에서는 201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교사 ○○○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외 16명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다솔유치원에서는 2013. 1. 23.자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관리하되 전산자료는 30년간 보관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유아가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의 생활기록부 서식을 규정된 별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록사항 누락 등 관리 소홀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다솔유치원에서는 2017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전체 유아 중 영유아건강검진 40명, 영유아구강검진 3명의 결과통보서관 일부 보관하고 있어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표관리에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2017년 돌봄 유치원 운영계획」(사립유치원 적용, 2017.02시행,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 의하면 돌봄 유치원 전담인력은 돌봄에 참여하는 유아를 직접 돌보는 역할을 하는 교원으로 관리자인 원장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다솔유치원에서는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 운영 및 원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에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예산항목을 임의로 편성한 후 유치원의 별도계좌에 2015회계 30,000,000원, 2016회계 30,000,000원 총6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 돌봄 유치원 전담교사 인건비의 명목으로 원장 ○○○에게 2017.03~2017.09까지 월500,000원(합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63,500천원)	시정완료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 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다솔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적립가능여부에 대한 관할청의 사전검토와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 없이 노후시설 보수를 이유로 2017년도에 67,545,167원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으며, 2014~2015년도에 유치원 차량구입을 위해 적립한 55,570,521원을 집행하고 적립금 집행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7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다솔유치원에서는 예산 및 결산서를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4~2017년 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다솔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5(유치원회계세입예산과목), 별표 6(유치원회계세출예산과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다솔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비 부족 등의 사유로 관할청의 허가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절차를 밟지 않고, 2016. 3. 25. 12,000,000원을 차입하여 2016. 3. 28. 12,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미라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미라유치원에서는 2017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보관에는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전체 유아 중 이가현 1부만 보관하고 있어 122명의 영·유아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결과표관리에는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미라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미라유치원에서는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치원 운영 및 원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2016회계 12,000,000원, 2017회계 7,242,000원 총 19,242,000원을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및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유치원의 별도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9,242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삼척	미라유치원	2017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등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미라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적립가능여부에 대한 관할청인 삼척교육지원청의 사전검토와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 없이 차량적립금을 이유로 36,815,000원, 시설적립금을 이유로 54,889,500원을 만기환급형(적립형) 보험으로 가입하였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 200,000원(기본 29,252원, 특약 44,131원, 적립 126,617원)을 납부하면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92,787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8,466천원)	시정완료
사립	삼척	미라유치원	2017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항에 예산 및 결산을 기간 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미라유치원에서는 예산 및 결산서를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4~2017년 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삼척	미라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미라유치원에서는 2014.3.1.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용하면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추천, 학부모 전체(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위원회 구성 후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유치원 예·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7	<p>「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 하고 공시함에 있어서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예산확정 후 전입금, 이월금 등의 세입금 증가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13회계연도 13,660,146원(예산액 160,343,100원, 세출결산액 174,003,246원), 2016회계연도 3,517,437원(예산액 201,586,900원, 세출결산액 205,104,337원) 등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7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2014. 3. 1.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학부모 전체(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위원회 구성 후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 없이 위원장만 선출하고, 2015년 학부모 위원 000, 2016년 학부모위원 000에 대한 신원조치를 실시하지 않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고성	푸른하늘유치원	2017	<p>「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정, 제28051호, 2017.5.29. 일부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에 사립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같은 규정 부칙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이 영에 의하 기준 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2항에 이 영 시행 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지·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외한다)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푸른하늘유치원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를 2003. 12. 29.까지 설립자인 원장 000의 명의로 전환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00리 마을회관(대지 410㎡, 건물 연면적 178.48㎡)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경동대부속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8호, 시행 2009. 6. 5.) 제5조(서식) 및 제11조(기타사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표]와 같으며,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연도 및 졸업대장번호(예시 : 2009-369)를 기재하고, 이 고시는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또한 같은 지침(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7호, 시행 2013. 1. 23.) 제3조(입력·서식 등) 제2항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으며, 제6조(인적사항) 제5호 ‘가족상황’ 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 제7조(학적사항) 제3항 ‘졸업후의 상황’ 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 입력, 제10조(유아발달상황) 제1항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 제11조(기타사항) 제1항 ‘졸업대장번호’ 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한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고,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 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14-50호] 서식이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는 개정 전 서식을 사용 하였으며, 2016년, 2017년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인적사항), 제7조(학적사항), 제9조(신체발달상황)에 「학교 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함에도 전반적인 기록들이 오류로 작성되어 있는 등 생활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경동대부속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처리를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로부터 검진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2015년도의 경우 전체원아 81명 중 30명, 2016년도는 전체유아 89명 중 28명, 2017년도는 전체유아 82명 중 27명 원아의 검진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등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와 검진 결과물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경동대부속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유치원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중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입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2014~2017회계연도에 유치원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예산 편성 이후 실제 세입예산 대비 수입액에 증감이 있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2014학년도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경동대부속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 없이 2012년 220,000,000원, 2013년~2017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및 이자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총 347,478,738원 중 2017회계연도 '유치원 건물 옥상 및 측면 방수공사' 2건 총 153,030,000원을 집행하고 194,448,738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경동대부속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또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르면 같은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9조 제6항에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p> <p>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은 업무용 차량으로 2017. 5. 19. 차량 1대(GENESIS G80 3.8 FINEST), 신차 장기 반납형,○○하○○○○, 차량가격 75,400천원)을 임대하면서 ㉠○○렌탈주식회사와 월 대여료 1,490,000원에 2017. 5. 19.부터 60개월간 자동차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렌탈비로 12,60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 2. 28. 렌탈 계약 해지로 위약금 20,961,677원 등 총 업무용 차량 렌탈비용으로 33,566,677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에, 업무용 차량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원장의 출장이 없는 데도 ‘업무용차량-유류대’ 외 12건 총 1,471,948원을 근무지의 지역(서울, 경기도 양주 등)에서 주유와 교통카드 충전을 한 사실이 있음.</p> <p>따라서, 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은 고액의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유치원회계를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량을 업무처리 목적이 아닌 원장 ○○○의 개인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5,038천원)	시정완료
사립	속초양양	경동대부속유치원	2018	<p>「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1천 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p> <p>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계약금액 1천 5백만원 이상인 계약일 2017. 3. 10.자 ‘유치원 건물 옥상 및 측면 방수공사’ (계약금액 금49,000,000원) 외 2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속초양양	경동대부속유치원	2018	<p>「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7장(공무국외여행)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여행 운영 계획을 심사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p> <p>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의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경직허가에는 “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강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경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경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근무상황의 관리)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고,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p> <p>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회계에서 2015. 9. 25. ‘목조유치원 시찰 참가비’로 ₩○○○○우드에 500,000원을 납부하고, 공무국외출장 처리 및 운영계획 수립 없이 2015. 10. 21.~10. 23. (2박 3일간) 목조유치원 관심 대상자를 위한 <미야자키 유치원 시찰 투어>를 하고 2015. 10. 23. “국외출장비 지급-일본목조유치원방문”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나 여비 정산 없이 출장비 886,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은 소속기관장의 경직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출강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기간 중 근무상황부 관리 없이 출장, 출강, 연수, 조퇴 및 외출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887천원)	시정완료
사립	태백	천사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천사유치원에서는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별첨] 과 같이 2016년 재원했던 원아 52명 중 영유아건강검진 38명 및 구강검진 44명의 결과 통보서를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태백	천사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 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유치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p> <p>또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천사유치원에서는 제4기(2014. 3. 1.~2015. 2. 28.)부터 제7기(2017. 3. 1.~2018. 2. 28.)까지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임기시작일-4월 1일)이 아닌 1년(임기시작일-3월 1일)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함에도 위원장의 임기를 당해인의 보직기간으로 규정(2017. 6. 9자 개정 「천사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하고 있으며, 위원회 임기시작일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p>	행정상처분-통보	시정완료
사립	정선	반야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반야유치원에서는 2016년도, 2017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2016학년도 전체 유아 중 영유아건강검진 39명의 결과통보서를, 2017학년도 전체 유아중 영유아건강검진 19명의 결과통보서관 일부 보관하고 있어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표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정선	반야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p> <p>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 및 별표 6(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따르며,</p> <p>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반야유치원에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치원교육과 무관한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4회에 걸쳐 총1,1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100천원)	시정완료
사립	정선	반야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p> <p>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 및 별표 6(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따르며,</p> <p>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반야유치원은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학교 운영 및 학생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유치원 운영 및 원아 교육과 관계없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인 00초등학교 장학금으로 2013~2017회계연도에 매년 4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유치원회계 '업무추진비' 및 '공통운영비' 과목 등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2,000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정선	반야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 및 별표 6(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으로,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 목으로 편성하고, 출장에 따른 소요여비는 여비 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p> <p>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반야유치원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담회성 경비, 교직원 경조 등의 경비는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목에서 집행하고, 출장여비는 여비 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교육과정회의’ 등 2013회계연도 15건 1,930,600원, 2014회계연도 15건 3,086,000원, 2015회계연도 6건 306,500원, 2016회계연도 25건 1,719,350원, 2017회계연도 26건 1,414,200원, 총 87건 8,456,650원을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정선	반야유치원	2018	<p>「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며, 제3조(납세의무자)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p> <p>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①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p> <p>또한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로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는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납부)에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반야유치원에서는 2014. 5. 9. 놀이터공사(계약업체: 0000, 계약금액 14,217,000원), 2015. 1. 20. 도어수리(계약업체: XXXX, 계약금액 8,962,000원), 2016. 1. 18. LED전등교체공사(계약업체: ☆☆☆☆☆☆☆, 계약금액 18,933,500원)의 대금을 집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p> <p>2014. 5. 9. 놀이터공사(계약업체: 0000, 계약금액 14,217,000원), 2015. 1. 20. 화장실 공사(계약업체: XXXX, 계약금액 10,413,700원), 2016. 1. 18. LED전등교체공사(계약업체: ☆☆☆☆☆☆☆, 계약금액 18,933,500원)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미징구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3월 23일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이 원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하여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2014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2015학년도에는 원아 112명 중 82명, 2017학년도에는 원아 97명 중 57명만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 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의거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관리자는 직원의 근무상황에 대해 사전 결재를 통해 직원의 복무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3월 23일 현재까지 소속 교직원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한 사실이 없고, 소속 교직원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근무지내 출장,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근무상황부에는 2014년~2018년 현재까지 총 3건(ooo 5일 병가 1건, ooo 2시간 30분 출장 1건, ooo 7시간 30분 출장 1건)의 근무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기관의 관리자인 원장(원감은 없음)은 교직원이 방학 중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연가, 공가, 조퇴, 외출, 출장 등을 근무상황부에 기재 또는 사전결재를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0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동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또는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p> <p>「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6년에 교사 000, 000와 2017년에 교사 000, 000에 대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08:00~18:00까지 평일 10시간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p> <p>그리고 2018년에는 교사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1주 간 7.5시간(1월 32.55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체결하였는데 연장근무의 경우 동법 제56조, 57조에 의거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휴가가 명시되지 않은 채 1주 간 7.5시간(1월 32.55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이 통상임금(계약서에 통상시급 7,721원 명시)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100분의 50 가산 임금이 못 미치는 금액을 월정액(000-월13,770원; 000, 000-월16,230원; 000-월36,230원; 000, 000, 000-월5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p> <p>설립자 겸 교사 000 외 8명의 교직원에 대한 2015년 및 2017년 근로계약서 등을 보존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 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에 의거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동법 제21조 4호에 의거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해야 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8년 3월 1일자로 원장이 의원면직을 한 이후 2018년 3월 23일 현재까지 원장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송 유치원의 설립자 겸 교사로 임면 보고된 000를 2018년 3월 6일 원장직무대행자로 지명 보고하였고 「유아교육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5학급 유치원으로서 원감을 두어야 하나 2007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원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p> <p>그리고 2018년 3월 2일~ 23일 현재까지 관할청에 교원으로 임면 보고된 000(설립자)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의거 교직원의 임무로서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해야 함에도 원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되어 교원 및 방과후과정 인사 관리, 식단관리, 교사연수계획 및 연수 관리의 행정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를 교육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 신청 등)에 의하면,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의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강릉시 두산동 000번지(대지, 총 1,933㎡) 및 강릉시 두산동 000번지(건, 총 1,017㎡)가 설립자 겸 교사 000의 소유이지만 2007년 설립당시 청송유치원 교지로는 인가받지 아니한 토지라는 이유로(2009년 매입), 설립당시 인가받은 체육장(503.5㎡)이 있음에도 추가로 필요한 체육장과 실습지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가 없이 2014회계부터 2016회계까지 유아 교육활동을 위한 명목으로 각각 ‘운동장’ 과 ‘자연아놀자 텃밭’ 으로 사용하면서 설립자 겸 교사 000의 계좌(농협 352-0680-0458-000, 2016.6.2.부터는 농협 352-1125-3432-000)로 총 32,4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2,400천원)</p>	<p>시정완료</p>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의하면 원장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는 금지하고 있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의하면 유치원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에 의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며 「조세법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p> <p>「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원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원장 000이 자신의 명의로 “청송교육원”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인 ‘이열싼스팍공’과 ‘베베피카부’ 강좌에 대하여 계약 체결없이 2017. 3월부터 2017. 5월까지 15,600,000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특히 2017.6.22.자로 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7.1.자로 5,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농협 351-0936-3946-00[예금주: 000(00교육원)]으로 총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4회계부터 2017회계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4.3.14. 집행한 상상이엔디 외 89건 247,231,820원에 대하여 이체(송금)확인서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다가 2018.3.23. 감사일에 66건(24건은 계좌변경 이전의 거래사항으로 제출 불가)을 일괄 제출하였고, 2017.7.7. 집행한 도장공사 외 2건 6,880,000원의 소규모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공사 사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실제 공사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품의, 계약, 집행에 있어 품의와 지출내역에 ‘G-국민은행 상상이엔디’와 같이 사업의 내용이 아닌 ‘기계반면 민영면’만 기재된 하여 일부 견적서와 있는 사업을 확인하고는 어떤</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29조(수입금의 수납)에 따라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 12월부터 2015. 4월까지의 미수납된 입학금, 교육비, 방과후교육비, 특기적성비 등의 수익자경비 19,950,000원에 대하여 미수납자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2015. 3월부터 2015. 8. 9.까지 설립자 겸 교사 ooo가 학부모에게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아 두어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2015. 8. 10. 일괄 유치원회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 6. 2.부터 2017. 5. 13.까지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7회 3,015,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015천원)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강릉	청송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규칙 제23조(결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을 명시해야 하며,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는 해당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p> <p>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서 가장 5일이 초과하여 제출하였고 운영위원회 자문은 38일에서 가장 78일이 초과하여 사후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p> <p>또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동안 2014년도 세입, 세출 각각 42,411,000원, 24,330,000원, 2015년도 세입, 세출 각각 15,278,000원, 13,286,000원, 2016년 세입, 세출 각각 63,312,000원, 63,053,00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p> <p>동해 바라밀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현재까지 매년 건강검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한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전체 유아가 아닌 일부 유아들에 대해서만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3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학년도에는 원아 129명 중 0명, 2015학년도에는 원아 146명 중 0명, 2016학년도에는 원아 146명 중 55명, 2017학년도에는 원아 113명 중 22명만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의거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관리자는 직원의 근무상황에 대해 사전 결재를 통해 직원의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의거 교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p> <p>동해 바라밀유치원에서는 소속 교원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근무지내 출장,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4년, 2015년에 교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근거서류인 근무상황부가 부존재하며 2016년 근무상황부에는 직원 000(차량기사)에 대한 연가 1회, 2017년에는 교사 000의 자격연수 출장 1건, 방과후 과정 교사 000의 특별휴가(결혼) 1건에 대한 결재를 제외하고 다른 교직원의 복무에 대한 기재사항 또는 결재사항이 없으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휴가에 대해서도 전체 교원이 사전결재나 근무상황부 기재 없이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함에도 2018년 근무상황부는 개인별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또한 연가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하는 국외여행에 대해서 원장 000 3회, 교사 000 2회, 교사 000 1회, 교사 000 1회, 교사 000 1회, 교사 000 1회, 교사 000 1회, 교사 000 1회, 직원 000 1회, 직원 000 5회, 직원 000 2회에 대해서 근무상황부 기재 및 사전 결재 없이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이 중 2017. 2. 20.~2017. 2. 23. 유치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연수는 교사들의 글로벌 현장학습이 목적이었음에도 교직원이 아닌 00스님(000, 동해 00사 주지), 00스님(000, 동해 00사 주지), 000(동해 00사 보살)을 포함하여 동행한 사실이 있으며 총 26,218,500원(1인당 1,747,900원)의 유치원 예산을 사용하여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5,244천원)	시정완료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및 제9조(징수시기)에 의하면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그리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 대상정보 등)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관련 정보(원비 및 예·결산 등 7가지 항목)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p> <p>동해 바라밀유치원에서는 2015회계년도부터 2018회계년도 7월 현재까지 수업료를 징수 및 수납하면서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만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모든 학부모에게 학기별로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일괄 안내함으로써 학기별 첫월을 제외하고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5개월 이전에 수업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음.</p> <p>※ 회계년도별 학기별 고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년도 1,2학기: 각 10,000원*6개월=60,000원 - 2016회계년도 1,2학기: 각 10,000원*6개월=60,000원 - 2017회계년도 1,2학기: 각 23,100원*6개월=138,600원 - 2018회계년도 1학기: 23,000원*6개월=138,000원 	신분상처분-주의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거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거 사립유치원의 장은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①항 6호)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2014년~2018년 교육부 및 강원도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원칙은 방과후 과정 내에서만 “유아 1인당 1일 1개 프로그램을 1시간 이내”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 수요 조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공고를 통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강사를 모집하여 유치원장과 계약 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절차 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참여 유아수, 강사료, 실시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산정 하되 가능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7만원) 내에서 운영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성화비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p> <p>동해 바라밀유치원에서는</p> <p>①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2014년 ~ 2016년까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2017년, 2018년 운영위원회에서만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음.</p> <p>② 또한 해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 2018년까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이 선정 되었다는 운영위원회 관련 협의록 등 근거 자료가 없음.</p> <p>③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강사를 모집하여 유치원장과 계약 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중 2014년 00스님(인성교육), 00스님(인성교육), 2015년 00스님(인성교육), 00스님(인성교육),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00스님(인성교육)의 계약서 및 근무일지가 부존재하여 실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학급의 주간교육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에도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내용이 부존재함에도 매월 상당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강사 채용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14년 00스님(000)에게 500,000원(500,000원×1개월), 00스님(000)에게 2,500,000원(500,000원×5개월), 2015년 00스님(000)에게 5,000,000원(500,000원×10개월), 2016년 00스님(000)에게 500,000원(500,000원×1개월), 00스님(000)에게 1,500,000원(500,000원×3개월), 2017년 00스님(000)에게 500,000원(500,000원×1개월)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밖에도 00스님(000)에게 관련 증빙자료 없이 2016년에는 교사교육 강사료 명목으로 4,000,000원(500,000원×8개월), 2017년에는 교원 봉급 명목으로 2,000,000원(2,000,000원×1개월), 교사 인성교육 강사료 명목으로 10,000,000원(2,000,000×5개월), 2018년에는 교사교육 강사료 명목으로 2,000,000원(500,000×4개월) 등 총 2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④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 내에서 “유아 1인당 1일 1개 프로그램을 1시간 이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만3세 월요일(영어, 다도), 만4세 수요일(다도, 발레), 만5세 화요일(다도, 역사)에 “1일 2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일 1개 프로그램 운영 원칙을 이기게 됨</p>	신분상처분-경고	재심의신청 기간 미도래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의하면 유치원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제2항에 의하면 한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 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p> <p>「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1.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한다.</p> <p>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강원도교육청)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1일 급식 지원액에 영양사의 인건비가 원별 월 200,000원으로 포함되어 있다.</p> <p>동해 바라밀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양사 채용과 인건비 지급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p> <p>가. 영양사 채용에 관한 사항</p> <p>000은 2014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바라밀유치원 영양사(주소: 경기도 수원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채용관련 서류(2013년도 채용신체검사서, 2013년도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졸업증명서, 면허증 등)만 있을뿐 채용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왔고 직원명부와 감사 제출자료에는 유치원에 재직중인 자로 되어 있다.</p> <p>바라밀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동해시 관내 4개 유치원(예쁜, 바라밀, 솔빛, 대동유치원)이 공동으로 면허가 있는 영양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대동유치원 원장이 주관하였다.</p> <p>그런데 000의 업무수행 여부를 살펴보면 영양사의 책무인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 어느 한가지라도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 근무하</p>	<p>신분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9,000천원)</p>	<p>재심의신청</p>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바라밀유치원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에 의하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에 의하면 유치원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고,</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제1항에 의하면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의하면 유치원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에 의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p> <p>「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원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신분상처분-경고	시정완료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과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동해 바라밀유치원에서는 2014.03.28.부터 2017.05.10.까지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3,38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신문상처분-주의,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3,380천원)</p>	<p>시정완료</p>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같은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 신청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유치원규칙,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의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p> <p>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준용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p> <p>동해 바라밀유치원에서는 2003.02.10.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교사의 면적을 1,000.135㎡로 인가받았고 2007.03.07. 교실 공간 등으로 80.91㎡를 증축하면서 인가를 받았는데, 2008.09.17. 사무실 공간 등으로 46㎡, 2014.08.13. 휴게실 및 화장실 공간 등으로 84.6㎡를 각각 증축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2018.07.13.)까지 총 130.6㎡의 면적을 인가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p> <p>또한, 설립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제0교구말사00사(이하,00사) 주지 '000'을 설립자로 인가받았고 이후 감사일 현재(2018.07.13.)까지 관할청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변경 인가 등 신청시 설립자 '000'으로 보고하였는데, 2014년 9월경 00사의 주지가 인사발령에 따라 '000'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바라밀유치원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통학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성명 등을 임의로 '000'로 변경하면서 관할청에 설립자 변경에 따른 인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p> <p>그리고 유치원알리미(정보공시)에 설립자를 '000'이 아닌 '000'라고 공시하여 인가사실과 다른 사항을 공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사실이 있음.</p>	<p>신문상처분-주의</p>	<p>시정완료</p>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바라밀유치원	2018	<p>「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거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2호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p> <p>또한, 「전기공사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제1항 및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고,</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및 「국토교통부고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공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따르면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p> <p>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제35조(계약의 원칙)에 의거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제38조(보증금)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제1항에 의거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할 경우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제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p>	<p>신문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14,652천원)</p>	<p>시정완료</p>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의하면 유치원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제2항에 의하면 한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 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p> <p>「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1.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시 및 배식 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한다.</p> <p>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강원도교육청)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1일 급식 지원액에 영양사의 인건비가 원별 월 200,000원으로 포함되어 있다.</p> <p>동해 대동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양사 채용과 인건비 지급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p> <p>가. 영양사 채용 부적정</p> <p>000은 2014년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대동유치원 영양사(경기도 수원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채용관련 서류(2013년도 채용신체검사서, 2018년도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졸업증명서, 면허증, 건강진단결과서 등)만 있을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왔다.</p> <p>대동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동해시 관내 4개 유치원(대동, 바라밀, 솔빛, 예쁜유치원)이 공동으로 면허가 있는 영양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대동유치원 원장이 주관하였다.</p> <p>그런데 영양사의 책무인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 어느 한가자라도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p> <p>또한 영양사 보수금 등 위생교육을 책임지던 바인양 학년도 부인1과 같이 2014, 2015년</p>	<p>신분상처분-경징계,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6,000천원)</p>	<p>재심의신청</p>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솔빛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의하면 유치원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제2항에 의하면 한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 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p> <p>「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1.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시 및 배식 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한다.</p> <p>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강원도교육청)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1일 급식 지원액에 영양사의 인건비가 원별 월 200,000원으로 포함되어 있다.</p> <p>동해 솔빛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양사 채용과 인건비 지급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p> <p>가. 영양사 채용 부적절</p> <p>000은 2013년경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솔빛유치원 영양사(경기도 수원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채용관련 서류(2013년도 채용신체검사서, 2018년도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졸업증명서, 면허증 등)만 있을뿐 채용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왔다.</p> <p>솔빛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동해시 관내 4개 유치원(예쁜, 바라밀, 솔빛, 대동유치원)이 공동으로 면허가 있는 영양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대동유치원 원장이 주관하였다.</p> <p>그런데 영양사의 책무인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은 한가지라도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p> <p>그리고 식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여(동해시)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참고하여 원장이</p>	<p>신문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8,400천원)</p>	<p>재심의신청</p>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예쁜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의하면 유치원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제2항에 의하면 한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 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p> <p>「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1.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시 및 배식 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한다.</p> <p>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강원도교육청)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1일 급식 지원액에 영양사의 인건비가 원별 월 200,000원으로 포함되어 있다.</p> <p>동해 예쁜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양사 채용과 인건비 지급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p> <p>가. 영양사 채용에 관한 사항</p> <p>000은 2015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예쁜유치원 영양사(경기도 수원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채용관련 서류(2013년도 채용신체검사서, 2013년도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졸업증명서, 면허증 등)만 있을뿐 채용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왔다.</p> <p>예쁜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동해시 관내 4개 유치원(예쁜, 바라밀, 솔빛, 대동유치원)이 공동으로 면허가 있는 영양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대동유치원 원장이 주관하였다.</p> <p>그런데 영양사의 책무인 식단 작성, 검시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 어느 한가지라도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p> <p>신대음향중대학교의 인건비급식관리규정(동해시별)에서 제공되는 신대음향중대학교의 인</p>	<p>신문상처분-경고, 행정상처분-시정, 재정상처분-회수(8,640천원)</p>	<p>재심의신청</p>

설립별	지역	유치원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요구	시정사항
사립	동해	대동유치원	2018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p>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및 제9조(징수시기)에 의하면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등을 수입으로 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29조(수입금의 수납)에 따라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제23조(결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을 명시해야 한다.</p> <p>그러나 동해 대동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업료 징수 및 관리와 예산집행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p> <p>가. 수업료 징수 시기 부적정</p> <p>2014회계년도부터 2018회계년도 8월 현재까지 수업료를 징수 및 수납하면서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학부모에게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분기별 첫월을 제외하고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2개월 이전에 수업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다.</p> <p>나. 수업료 별도계좌 수납 및 회계 미처리</p> <p>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는 유치원회계 계좌(농협 351-0596-00000 대동유치원)로 수납하여 예산에 편성·관리하여야 함에도 2014회계년도부터 2017회계년도까지 학부모에게 원장 000 명의 새마을금고 별도계좌(4232-09-0000)로 수업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4년간 총 187,724,100원을 수납함으로써 교비와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관리하였고, 별도계좌로 받은 수업료를 즉시 유치원회계로 수납처리 하지 아니하고 유치원회계 통장의 잔액이 부족해지면 일부 금액만 때때로 회계로 처리하다가 2018회계년도에 이르러서야 유치원회계 계좌로 직접 징수 및 수납처리를 시작하였으며,</p> <p>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업무 미숙의 이유로 4년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금액 89,258,100원은 통학차량구입, 차임금 미상환액 보전, 옥상방수의 목적으로 별도계좌에서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다.</p>	신분상처분-경고	재심의신청 기간 미도래